

「論說」

水産業에 있어서 協業化의 必要성과 그 展開方案

A Problem of The Cooperation in Fisheries

崔 萬 鎬
Man Ho Choi

序

最近의 水産業發展이 劃期的이었음에도 不拘하고 政府(水產廳)는 水産業에 있어서 協業化運動을 展開시켜 水産業의 構造를 改善시켜 漁民所得增大에 더욱 기여코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社會的, 時代的要請에 따라 水産業뿐 아니고 全産業에 이르기까지 構造改善의 한 方案으로 關心을 기울이고 있는 協業化問題를 理解해 보기 爲하여 몇가지 文獻과 資料를 가지고 整理해 본 것이다.

다만 理論과 내용이 不足한 小論을 한국 水產經營學會 1973年度 定期總會와 水產經營學 세미나 開催를 記念키 爲해 作成했다는 것이 송구스러운 따름이다.

協業化의 必要성과 그 意義

協業化란 協業의 法則에 따라 事業이나 作業을 해나감을 뜻 하는 것으로 協業(Cooperation)의 概念이 즉 協業化의 뜻과 같은 것이다. 協業이란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協同해서 일출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經濟學的으로 定義하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同一生産過程이나 또는 關聯된 生産過程에 있어서 一定한 計劃과 指揮아래 作業을 共同으로 수행하는 勞動者의 勞動形態라 할수 있다. 經營學的意味에서의 協業의 定義도 역시 勞動者의 作業形態를 뜻하는 것으로 勞動者가 生産을 爲해 結合되어 있는 形態를 통털어 協業이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同一種類의 作業을 爲한 勞動者의 結合形態인 單純協業(Simple Cooperation)과 作業過程이나 種類를 달리하는 勞動者의 作業結合形態인 複雜協業(Complex Cooperation)으로 區分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分業의 原理에 依하여 勞動者가 結合된 狀態는 後者に 屬하며 처음부터 完成品段階에 까지 單一過程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單純協

水産業에 있어서 協業化의 必要性和 그 展開 方案

業인前者를 가르킨다.

이와같은 協業은 彌始共同體社會에서나 奴隸制社會, 封建社會에 있어서도 存在해 왔던 것이며 그것은 오늘날 資本主義社會에서 協業의 必要性和 마찬가지로 勞動生産性의 向上을 追求하기 爲해서였다.

어떤 經濟學者는 資本主義社會에서의 協業의 存在機能은 「相對的剩餘價值」(relative surplus value)의 生産에 있다고한 것과 같이 結局 資本家가 그의 資本投下에서 最大目標인 剩餘價值 즉 利潤을 얻기위해서는 勞動生産性의 向上에 期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小生産者들이 自己방어와 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市場活動과 生産過程에서 個別的이고 小規模인 것 때문에 不利하게 되는 經濟的隘路를 克服하는 길은 그들相互協同하여 規模를 늘리고 組織力을 발휘할 수 있는 協業의 길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協業은 그가 지니고 있는 一般的인 利點내지 經濟的效果가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 사람이 生産手段을 共同으로 使用할 때 우선 經費가 節約될 것이며,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作業을 벌릴 경우 競爭心과 勞動仕氣가 昂揚되어 노동능율을 增進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生産規模를 擴大하여 大規模經營의 有利性이 保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뒤에 說明되겠지만 協業化의 形態에는 協業的作業組織과 協業的經營組織이라는 2가지 協業化形態가 있는 것이며, 前者는 勞動의 協業 後者는 資本의 協同的結合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이 協同組合과 다른점은 協同組合은 構成員에게 事業을 利用시킴에 있고 組合의 運營은 組合員의 委任을 받은 經營者集團에 依해 이루어지나 協業은 構成員스스로가 事業을 直接運營하는 運營者라는 점과, 協同組合은 流通過程에서의 大量去來의 利點과 商業資本의 介入을 排除함으로써 價値를 實現시키는 機能밖에 없으나 協業化는 直接生産過程까지 關與함으로써 消極的 價値實現 機能뿐 아니라 價値를 生産하게 되는 機能까지 發揮하게 되는 價値創造機能을 갖는 것이 다르다.

經濟적으로 弱한 集團들이 分散적으로 活動함으로써 애로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協業化는 더욱 絶實하게 됨으로 大部分의 經營이 영세漁家漁業이라는 水産業과 經濟적으로 落後된 漁村社會에 있어서 이와같은 協業化의 重要性이 더 강조됨을 알 수 있다.

水産業에 있어서 協業化의 必要性은 協業化하지 않으면 안될 必然的理由와 協業化함으로써 나타나는 有利한 條件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後者에 對한 必要性은 經濟的效果로서 說明이 充分하므로 前者의 경우에 限해서만 그 必要性을 살펴보기로 한다면 水産業의 構造의 特質과 構造改善의 必要性이라고 하는 점에 根據를 둘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水産業이 最近 10餘年동안에 格段의 成長과 發展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아직도 生産, 經營, 所得, 就業등의 여러部門에서 水産業의 發展을 阻止시켜온 諸特質이 내포 되어 있다는 事實 또한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水産業은 아직도 沿岸漁業生産爲主이며, 5톤未滿의 小型船舶과 無動力漁船, 無漁船漁家 등 低生産力集團에 依해 支配되고 있는 生産構造의 特質.

둘째, 小數大規模資本의 漁業을 停點으로 多數의 零細漁家를 廣範圍한 底邊構造로 하는 非資本制的 漁業의 比重이 크다는 經營構造의 特質.

셋째, 特別 農業과 關聯된 兼業依存率이 높은 不完全過剩就業構造의 特質.

네째, 水産業內部 및 外部(他産業)와의 所得隔差가 심하다는 不平等所得構造의 特質 등이 諸特徵的 要因이 相互有機的關聯下에서 複合的으로 作用함으로써 政府의 積極的인 水産施策과 財政投融資의 強化로서 現在 以上의 發展이 可能하였음에도(水産業成長率은 國民經濟成率을 上廻한 急進的 成長이 있으나 그 以上의 發展도 可能했으리라는 뜻) 그 以上의 發展이 沮止當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特質은 오늘에 形成된 것이 아니고 傳統的으로 內在되어 왔던 것이며 또한 비단 水産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만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政府가 協業化를 推進示圖코자 하는 것도 위의 構造的沮害要因을 除去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며 그 方案의 하나가 協業化로 나타나게 된데는 上記의 諸特質이 零細漁家의 支配의 比重에서 나타나고 水産業의 構造改善과 生産力을 發展시키기 爲해서는 이 零細漁家의 分解를 반드시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이 零細漁家를 分解시킬 수 있는 方法이 自律的 規模擴大나 集中的投資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한 個別漁家의 協業化에 依한 規模의 擴大 또는 生産組織의 새로운 變形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漁家經濟만을 놓고 볼때 生産力이 發展되기 爲해서는(生産力이란 財貨의 生産能力을 말하는 것이며 生産能力은 所與의 資源에서 資本과 勞動의 生産手段 및 生産組織에 依해 決定된다.) 經營規模의 擴大가 必要하며 規模의 擴大는 生産手段의 追加가 있어야 하고 이를 爲해서는 資本의 蓄積이 先行되어야 하며 그러기 爲해서는 많은 量의 生産이 可能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漁家의 經營規模(零細性) 經營形態(個別經營으로서 家計와 生産의 未分化) 經營組織(個別的 分散的 孤立組織) 再生産論理(單純再生産活動의 反復現象)로 말미암아 企業漁家로의 自律的 發展은 期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目前에 利益이 展開되지 않는 限 새로운 制度나 方法이 有利 하다고 認定하면서도 쉽게 適應하지 못하는 漁民의 非進趣的 消極的 思考方式은 비록 「協業化」 利點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 漁民스스로에 의한 協業化의 積極的 推進 運動이 自律的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政府 또는 水協系統의 推進主體에 依한 協業化의 推進運動이 必要하게 된다.

以上의 協業化概念과 그 必要性에서 協業化의 意義를 要約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水産業에 있어서의 協業化는 水産業의 發展과 漁民所得의 增大에 있다고 보겠으나 몇 개로 나누어 指摘하면 그것은 ①水産業에 있어서 生産力을 發展시킴으로써 生産性을 向上시켜 漁民所得을 增大시키는데 目標이 있는 것이며 ②水産業의 特徵的構造를 改善시킨 것이 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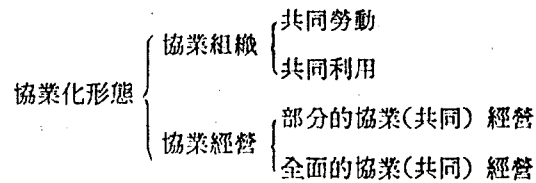
水産業에 있어서 協業化의 必要性和 그 展開 方案

能하고 ③漁場의 合理的인 利用과 그 管理를 可할 수 있으며 ④ 漁村社會의 새로운 開發方
向과 意識構造를 轉換케 함에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協業化는 ①小規模零細漁家의 結合내지 協同으로서 大規模漁業이 누릴
수 있는 經營上의 利點과 ②漁業經費의 節減 ③資本裝備를 一定하다고 하여도 勞動 혹은
技術의 集約化로서 勞動生産性의 向上을 期待할 수 있으며, ④生産과 運般, 販賣 등의 過程
에서 專門的 分業效果를 가져올 수 있고 ⑤ 그것은 組織的市場活動으로 販賣, 購買의 有利
性을 확보할 수 있다. 이로서 水産業은 生産力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게 되고 漁家經營은
個別經營에 依한것 以上の 所得增大와 沿岸漁業의 構造改善이 促進될 수 있게 된다.

協業化의 類型과 그 展開 方案

個別經營으로서는 그 限界와 애로를 극복할 수 없는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시장조건의 변
화, 기술의 혁신 및 규모의 擴大문제를 協業化로서 가능케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方法이
作業의 協業組織과 事業의 協業經營에 있다. 協業組織에는 勞動手段과 一定한 施設을 共有
하여 共同으로 利用하는 共同이용과 共同작업이 있으며, 協業經營에는 부분적 共同 經營과
전면적 共同 經營이 있다. 이와 같은 協業化의 形態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1) 共同勞動(勞動의 協業化)

作業의 協業化로서 多數人의 노동력을 組織化하여 作業을 共同으로 分擔 營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共同利用보다 先行된 勞動過程의 協同化로서 封建社會經濟에서도 存在해
왔으며 現在도 漁村社會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初步的協業化形態이다. 共同漁場利用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이는 單純히 勞動作業을 組織化 體系化 함으로써 일을 빨리 끝낸다는
利益外에는 資本의 規模化로서 漁業生産에 미치는 生産力의 發揮에는 不可能한 協業形態라
할 수 있다.

2) 共同利用(利用施設의 協業化)

勞動過程의 協業化에서 볼 수 있는 第二段階의 協業組織이다. 말하자면 個別的營世經營
이 갖추기 어려운 코도의 施設이나 裝備 漁探器, 農業에서 트랙터 耕운기 道耕공장등을 다
수인의 共同出資로서 設置利用함으로써 개별經營의 營世성을 극복 할 수 있는 協業形態다.

이때 生産活動은 各者が 獨立的이며 生産手段만을 共有하는 것으로 生産物도 直接生産者에게 歸屬하게 된다. 漁協이나 農協의 利用事業은 農漁民의 이와 같은 生産手段의 共同利用을 前提로하는 일종의 共同利用 事業이다. 自己 所有財産에 對한 保守性과 愛着心이 강한 社會에서는 大體로 完全協業의 採用이 抑制되기 쉬우므로 勞動의 共同投下, 施設의 共同利用으로써 生産性을 向上시킬수 있는 方法은 위의 1), 2)의 協業形態가 가장 適合한 方法이다.

3) 一部協業經營

一部共同經營이라고도 하나 「協業」經營이라고 하는 理由는 單純한 經濟的理由로 資本을 共同投下하여 運營하는 것이 아니고 相互扶助的 強한 精神力의 結合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共同目標을 指向하고자 하는 經營이라는 점에서 協業經營이라 하는 것이다.

漁民의 漁業經營中 一部만을 共同으로 營爲하고 다를 一部는 自己스스로 營爲하게 되는 部分的協業經營에는 例를들어 漁船漁業을 스스로 經營하면서 養殖部門에서만 共同經營에 參與하는 形態나 그 反對의 경우등이 있다. 이것은 沿岸漁民의 勞動日數와 事業選擇效果를 높임으로써 漁民所得을 增大시키고자 하는 多角經營方法의 하나로서 이때 漁家所得은 個別經營所得과 協業經營所得의 合計額이되며 生活根據도 兩面に 걸쳐있게 된다.

4) 全面協業經營

그러나 위의 一部協業經營만으로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個別經營의 限界를 完全打開하지는 못하게 된다. 各者が 所有하는 漁場, 漁船, 施設 및 資本을 全部 提供하여 새로운 經營體를 組織하는 形態가 全面協業化이다.

이것은 共同勞動과 共同運營을 前提로 이루어지므로 個別經營은 止揚되고 擴大된 經營單位로서 別個의 共同經營主體가 成立하게 되는 것이며 大規模經營의 有利性을 積極的으로 追求할 수 있는 企業的 生産方式이 가능케 된다.

이때 獲得된 收益金의 分配方式에는 大體로 2가지 方法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個別經營의 階層差를 現實 그대로 認定하면서 所謂 資本에 依한 分配方式을 取하는 方法과 다른 하나는 共同化할 것을 前提로 個別經營의 出資를 一定하게 平均化하여 收益을 均等히 配分하는 方法이다.

水産業에서 示圖코져하는 協業化의 窮極的形態는 이 全面協業經營에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漁船漁業에 對한 全面協業經營形態로 發展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서 協業化의 發展은 生産의 共同化를 必然的으로 가져 오게 되어 資本主義的 生産樣式과 對立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全面協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個別漁家의 生活全般이 吸收되는 것이 아니므로 集團生活은 될 수 없으며, 生産手段의 共同投下에 依한 指分을 認定하므로 비록 協業經營體라는 經營主體의 成立으로 漁業經營活動이 營爲되나 最終의 所有는 역시 個別漁民에 있는 것이다.

水産業에 있어서 協業化의 必要性和 그 展開 方案

그러므로 社會主義生産組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財産의 組合 또는 國有原則의 公有制와 個人指分을 認定하지 않는 것과는 本質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一般法人企業과도 다른 점은 指分자인 者가 直接 生産活動에 參加하는 점이다.

協業經營은 個別經營의 연장이 아닌 別個의 經營체로 存立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現經濟體制下에서 順應할 수 있는 事業체가 되어야함으로 企業的思考方式에 依한 事業運營計劃이 있어야하며, 다음은 相互扶助精神에 依한 結合이므로 協業經營構成員전원의 意見을 結集할 수 있는 民主的 運營原則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構成員들의 出資 및 經費負擔과 協業經營체의 財産을 分明히할 수 있는 會計制度가 水産簿記에 依해 마련되어져야하며 또한 經營活動을 規律하고 運營의 原則을 遵守하기爲한 定款등 法規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協業經營체의 定款作成體系를 草案하면 다음과 같다.

第 1 章 總則

名稱과 場所, 目的, 事業의 種類門戶開放의 原則, 協業經營체와 個人과의 關係.

第 2 章 構成員

構成員의 資格, 加入 및 脫退, 指分 關係, 權利와 義務

第 3 章 事業 活動方法

漁場 또는 施設의 使用方法, 生産物의 處理, 資材의 購入方法

第 4 章 出資와 積立金

出資의 限度와 方法, 指分의 計算 및 取得, 積立金의 使用과 限度, 外部支援金에 對한 處理 方法, 事業準備金

第 5 章 作業組織과 勞動規律.

分業과 專門化의 責任制, 作業班편성, 勞動義務, 勞動規定

第 6 章 勞務支給基準

勞動에 對한 넷가 支給과 事務職員 技術職등에 對한 評價基準

第 7 章 經理와 收益分配

豫算의 編成基準, 管理費의 支出規定, 經費 및 會計의 原則, 會計年度, 經費의 징수 부과방법, 經理公開, 收益金分配의 順位등 分배방법

第 8 章 組織

機關과 部署의 規定, 任期, 機能의 限界, 構成原則

第 9 章 會議 및 運營

會議의 種類 및 運營의 方法, 會議의 機能과 權限, 成立과 要件

第 10 章 解散

解散의 事由, 解散時의 財産 및 指分處理方法, 清算人構成與否

第 11 章 附則

別途의 規程과, 通常慣例, 効力發生與否 등,

한마디로 協業化로 하여도 協業을 하는 方法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며, 各 漁村社會의 性格과 漁場의 種類 漁業의 種類, 漁船의 規模, 魚種등에 따라 여러가지의 協業化가 나올 수 있으므로 거기에 適切한 協業化를 採擇하는 것이 生産力의 發展과 漁民所得의 增大에는 勿論 協業化의 成功이 좌우되는 것이다.

가령 沿岸共同漁場의 管理利用에는 協業作業組織에 依한 共同勞動의 協業이 有利할 것이며, 그 地方漁民의 所有意識이 강한 곳에서는 漁船漁業이라하여도 全面協業은 不可能하게 됨으로 部分的 協業化부터 示圖해보는 方法이라든가, 政府나 水協의 漁船建造計劃物量을 共同으로 配定받아 여기에 各者의 勞動과 技術을 提供하여 共同運營을 해봄으로써 점차 全面 協業化로 發展시킬 수 있는 土臺를 먼저 마련하는 方法 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重要的 것은 先進協業漁村을 見學하여 自己漁村과 漁業에는 과연 어떠한 協業化가 可能할 것인지를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며 처음에는 가장 손쉬운 協業부터 始作하여 스스로 協業의 有利性을 터득할 것이 先決문제다.

1) 漁船漁業

鮫鯨網漁業이나 機船權現網漁業등은 同種漁業이 一定地域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經營體와 漁船이 한곳에 集結되어 있으므로 機關의 修理 및 施設의 共同利用, 集團操業 등 部分協業의 採用이 可能하리라 본다.

그리고 機船旋網漁業과 東海岸의 오징어一本釣漁業 公池流子網漁業등에서도 이 方法이 가능하며 특히 共同運搬船의 利用은 海上操業時間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漁撈活動을 훨씬 增進시키게 된다.

2) 養殖業 및 共同漁場

陸上定着產業과 유사하므로 經營活動이 比較的安定的인데다 多數의 勞動이 一時에 要求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오히려 漁船漁業보다 協業化는 더 쉬울 것이다. 그것은 作業의 共同化와 投資의 共同化로서 協業組織내지 一部協業經營形態에 의한 協業化가 現存漁村契를 中心으로 推進가능하다.

協業化의 事例

우리나라 (釜山市漁協의 D漁村契의 例)

契員數80名이며, 事業種目は 第一種共同漁場運營과 지역養殖業이다.

從前까지는 個別經營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契員共同의 海藻採取船을 建造하였고 共同으

수산업에 있어서 協業化의 必要성과 그 展開 方案

로 미역 種苗培養場을 建設하여 契員이 共同으로 運營하고 있다.

契員 1人當 3萬원 내지 30萬원의 自己資金 負擔으로 170萬원의 自己資金과 釜山市漁協 水協용자 170만인 總 340萬원으로 미역종묘 220,000m 배양규모의 종묘배양장과 200坪 규모의 공동미역건조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契員은 契로부터 分配받은 종묘를 가지고 個別生産하여 판매는 共同販賣形式을 取하고 있는 일종의 部分協業化方式이다.

1972년의 이 漁村契의 協業 事業成果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서 나온 純利益金은 自体 負擔金만 환불하고 다시 再投資했다.

釜山市漁協漁D漁村契 미역共同生産 및 販賣收益 (1972)

支 出	收 益
施 設 費 12,500,400원	販賣額 22,000,000원
種苗生産費 3,400,000 "	
소 계 15,900,400 "	
純 利 益 6,099,600 "	
計 22,000,000 "	22,000,000원

資料 : 釜山市 漁協 D漁村契

그러나 이 漁村契의 協業化 示圖도 문제점이 되는 것은 現在의 漁村契長 D氏의 勞力이 있었지만은 大量生産에 對한 販路開拓과 養殖技術이 뒤따르지 못하여 所期의 成果는 아니라는 것이다.

日本(山口縣黃波漁村의 고등어 전갱이 一本釣協業經營의 例)

1956年 6月부터 전갱이와 고등어 一本釣漁業을 行하던 四名의 漁夫가 各各 漁船一隻씩을 提供하여 共同組를 組織하고 水産試驗場으로 부터 魚群探知器등 新장비를 導入하여 共同操業能率을 向上시킨 事例다. 처음에는 이들이 魚探器의 共同利用에서 出發하여 各各 個別經營을 하였으나 좋은 結果를 가져와 그 다음해부터 共同計算을 하게된 全面協業經營으로 發展하였것이다.

共同計算의 動機는 「오징어」등 釣業에 必要한 살아있는 먹이를 求하기위하여 밤中에 近海에 出漁中인 오징어漁船에까지 操業을 中斷하고 가야됨으로 單船經營인 경우 操業 中斷으로 能率을 저하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수척이 한組가된 이들은 當番制로 먹이를 求해 주는 責任을 맡게 되면 다른 漁船은 계속 釣업을 할 수 있으므로 어획고는 훨씬 많은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操業이 中斷된 漁船을 위해 漁獲金額을 共同計算해야 할 必要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2年後에 다시 한척이 加入하여 5隻 1組가 되었고 船主와 9名의 漁夫가 합쳐 15名의 組職을 가진 協業經營體로서 繼續 그 成果가 좋아 全船에 魚探器를 設置하게 되었으며,

水産經營論集

처음의 2.5톤 小型船舶이 千年後에는 4톤級으로 發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年間 漁獲高는 初期에 650萬원이었던 것이 1962년에 930萬원으로 增加하였고 1人當分配所得도 着實히 增加하여 比較的安定된 收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日本에 있어서 共同經營(協業化)과 其他經營과의 漁船收益金額을 比較하면 다음 表와 같다.

1隻當年間漁獲金額 (日本)

(單位: 萬圓)

經營形態	年度 規模	1957	1958	1959	1961	1962
		2~3S/T	2~3S/T	4~5S/T	4~5S/T	4~5S/T
共同經營		165	160	154	164	183
其他平均		53	42	73	71	80
其他最漁獲船		123	122	100	112	80
全平均		62	52	94	102	89

資料: 釜山水産大學論文集 第4輯 1969 (人文社會科學)

이들의 經營計算과 收益分配의 方法은 各漁船의 漁獲金額을 「풀」로하고 여기서 全体經費를 除한 利益을 15名이 平等分配했다.

이로서 黃波戶漁村에는 共同組가 盛行되었고 이 漁村은 나중에 共同으로 高級漁의 蓄養에서 出荷課整까지 及び하여 協業經營의 많은 利點을 얻었다. 이들의 協業化가 成功된 要因에는 積極的意慾에 찬 漁業者의 同志의 結合과 構成員의 技能水準이 거의 均等했다는 것, 그리고 參加漁船이 同型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누린 協業經營의 利點을 다시 要約하면 첫째 操業能率向上과 둘째 漁業의 多角化 셋째 出荷調整에 依한 販賣效果 등으로 要約된다. 그리고 他地方漁民에 비해 훨씬 높은 所得水準을 維持할 수 있었고, 점차 漁船이 大型化함으로써 近代水産經營技法이 可能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외도 日本의 香川縣丸龜漁村의 漁閑期克服을 爲한 海苔養殖業의 協業經營成功事例라든지 忠武市漁協管内의 2個漁村契, 群山漁協管内의 1個漁村契, 三千浦漁協管内의 2個漁村契 등의 例도 있으나 그 大部分이 共同漁場 就業에서 볼 수 있는 協業勞動組織에 不過하므로 여기서의 소개는 생략한다.

단 우리나라나 日本의 경우를莫論하고 漁民의 同志의 結合意慾과 指導者의 熱誠 있는 努力이 成敗의 要件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水産業에 있어서 協業化의 必要性和 그 展開 方案

協業化의 問題點과 그 對策

協業化推進에 있어 一般的으로 그 阻害要因이 될 수 있는것은

첫째, 沿岸漁民의 強한 自己所有意識이다. 이것은 利己心の 支配로 排他性이 協同의 結合을 沮止하게 된다.

둘째는 오랫동안 傳統의 停滯社會에서 生活해온 停滯意識과 因習에 얽매여온 保守性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局面이나 現象의 變化를 몹시 두려워하는데서 既存經營方法을 쉽게 탈피하지 못하는 消極的 思考方式이다.

세째는 獻身의 指導者의 不足이 큰 問題로 되고 있다. 실사 協業化가 有利하다고 하여도 一時的으로 個人에게 돌아오는 利益이 많지 않다고 하여 全體를 위해 自己 努力을 받치고 자하는 指導者가 아쉽다는 것이다.

네째는 漁場所有權制度의 改善이 뒤따르지 않고는 어렵다.

1970年現在 沿岸淺海養殖場은 거의 個人所有로 되었으며 共同所有나 會社所有는 3%에 도 못미치고 있다.

밥은 나누어 먹을수 있어도 財産의 共有는 不可能한 것이 農民의 農土에 對한, 그리고 漁民의 漁場에 對한 重要한 財産所有意識이다. 이들이 協業을 爲하여 自己漁場을 내 놓거나 分割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며, 協業의 第一段階로서 共同漁場에 對한 共同作業形態로 協業化를 試圖코저 하여도 對象 漁場이 없는 곳에서는 別途理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阻害要因 및 問題點을 打開하기 爲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條件의 先行과 強化가 必要할 것이다.

첫째, 外國의 경우를 보더라도 協業化를 成功시킨 要因에는 반드시 構成員의 自覺과 有能한 指導者가 있었다는 事實을 想起하여 먼저 有能한 漁村의 指導者를 發見할 것이 先決要件이다. 慶南의 馬山市漁協산하 D漁村契의 경우 全國模範漁村으로 注目되던것이 當時漁村契長의 不在로 지금은 그 組合가운데서도 下位의 水準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 좋은 예다.

둘째, 協業化는 利害者集團의 利益뿐 아니라 水産業의 構造改善과 漁村地域社會建設의 開發形態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水協과 漁協의 指導事業을 通하여 그 重要性和 必要성을 強力히 주지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漁民과 漁業內部에서 이 運動을 積極的으로 胚胎시키지 못할 때 外部에서 契機를 마련해 줄 必要가 있는 것이다.

세째, 資金支援과 制度의 保障이 있어야 할 것이다.

協業經營體, 協業推進漁村등에 對하여는 資金支援과 融資斡旋에 優先的의 利益이 주어질 것과 漁村工業化의 推進 등 各種間接資本의 投入이 先行되는 것은 協業化의 誘導發展에 有益한

水産經營論集

契機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漁村建設의 一環이라 볼 수 있으며 非營利的組織이 될 것이므로 水産振興法등의 保障과 稅制上的의 惠澤이 주어져야 할 것은 勿論이다.

네째, 水協系統의 單位組合을 育成하는 것은 協業化를 促進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協業이 漁民의 自律的 發生을 可能케 했다 하더라도 이의 推進主体는 當分間 地先漁協이 擔當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漁民과 直結된 協同組合으로서 單位地區別漁協은 漁民의 모든 活動과 가장 關係를 깊어 하고 있으므로 單位漁協이 漁民指導機關으로서, 그리고 協業化의 推進主体로서의 機能을 遺憾없이 發揮할 수 있도록 自律權을 保障해야 하며 自立的水準으로 育成시켜야만 될 것이다.

다섯째, 地先沿岸漁場을 地先漁民이 共同으로 享有할 수 있도록 個人允許處分을 制限할 必要가 있으며 漁村契 또는 協業漁場에 對해서도 共同漁業權의 允許를 認定함으로써 協業의 示圖가 漁村契 또는 漁村을 中心으로 가능하도록 合法化시키는 일이다. (水産業法第 10 條參照)

以上과 같이 協業化에 대하여 概括적으로 그 類型과 展開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그리고 몇개의 事例들을 들어 考察해 보았으나 現段階로서는 그의 廣範한 實現이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所與의 條件下에서 孤立分의 散이고 個別的經營活動을 영위하는 水産業에 있어서 이들 集團의 不利益을 除去하는 길은 協業化에 依한 規模의 擴大, 組織力의 發揮밖에 없는 것이다. 農業政策의 專門家도 農業生産力의 低位性克服과 構造改善을 期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은 역시 農業에서의 協業化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水産業에서도 沿岸漁業의 企業化促進과 生産力發展의 契機를 協業化에서 捕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 問題는 綜合的인 研究와 專門知識이 항상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가장 쉽고 가능한 協業化부터 점차 推進시키고 類型別로 示範地域과 經營體를 組織하여 撰擇적으로 그 規模를 擴大함이 바람직하다. 메마침 1974년부터 水協은 全國몇個地域漁村에 30톤級一本釣漁船을 貸與하여 協業方式에 依한 共同經營을 示圖해 보리라는 計劃을 추진중에 있어 그 成果가 期待될 뿐이다. (釜山市 漁業協同組合 組合長)

參 考 文 獻

1. 釜山水産大學論文集 第四輯 1969(人文社會)
2. 韓國開發問題研究所: 沿岸漁民의 所得增大와 協業化方案 1972. 12
3. 日本協同組合研究會編: 市場問題와 協同組合